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독도영토학

21502544 영어영문학과 노범철

독도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써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독도에서도 동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자리한다.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의 숙소,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흔적이 있다.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급해 식생 피복이 불량하다. 정상부의 평평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자리한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엉업활동을 해 온 영토이다.

독도는 [울릉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466&ref=y)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호적상 등록된 기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또한 독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 고시, 어업자원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문화재위원회 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등 16개의 독도 관련 법령을 보유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땅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독도는 삼국사기(512년)에서 기록된 것처럼 신라의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역사를 함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려시대 자료 고려사(高麗史)를 보게되면 독도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1454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이자,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산도(于山島) · 울릉도(鬱陵島)는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 라고 기록하여 울진현에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그 지역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도 기록되고 있다.

이후 17세기 독도에 영유권을 다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 사건이 바로 안용복 납치 사건이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3월 박어준과 함께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로 끌려갔다. 호키국(돗토리번의 영지)의 번주 이케다 쓰나키요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가 호키 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번주(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대마도 번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竹島)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조정은 대마도로 보낸 답변에서 독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했다. 대마도 번주는 독도릉도’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 표현을 지울 것을 조선 측에 주장했다. 한편 안용복의 심문에서 조정은 호키슈에서는 안용복을 잘 대해줬지만 대마도에서 책망한 점을 알아내고 대마도 번주의 행동이 에도 막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행동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겠다고 말해 사절을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서 울릉도와 죽도(다케시마)가 서로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이후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 요시쓰구(일본어: 宗義倫)가 죽고 그 아우인 소 요시미치(일본어: 宗義方)가 대마도 번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그 후 조선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獨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의 항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내용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1869~1870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이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독도는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과의 거리가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이 틀림없다.

실측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일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영토가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 먼저 해당 영토가 무주지여야 하며, 무주지를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국민이 살거나 나라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라는 칙령 제 41호를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1904년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즉 러일전쟁 과정에서 동해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으로 인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였으며, 영도편입을 시도하였고 시마네현에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의 단계적 침탈 과정이였으며,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므로 국제법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카이로 선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은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 1943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선언에서 연합국(미국, 영국, 중국) 일본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침탈한 타국의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일도 논의되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 할 수 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은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처우를 결정짓기 위함이였다. 13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이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제 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유엔군의 KADIZ는‘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은 독도의 영유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 전쟁 중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근거|작성자 Dorte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시대 - 조선시대 지리지와 함께 한 독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 독도로 보는 우리역사)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사랑운동본부] 역사적 근거 history event

[외교부 독도] 우리 영토인 근거

[외교부 독도] 독도팜플렛

[네이버 블로그]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이유